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행위 금지 〉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608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검토의견 .....                         | 2 |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행위 금지 ..... | 2 |



## I. 개요

### 1.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608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17.

(3) 회 부 일 : 2024. 12. 18.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 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제89조제1항 신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6까지 신설).

## II. 검토의견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행위 금지

- 개정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제공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 · 제89조제1항 신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6까지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69조(권익보호) ① ~ ③ (생략)<br><u>&lt;신설&gt;</u> | 제69조(권익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br><u>④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배제·분리·거부(이하 “차별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현행                                                                                | 개정안                                                                                                                                                                                                                                                                                                                                                                                                                                                                                                                                                                                      |
|-----------------------------------------------------------------------------------|------------------------------------------------------------------------------------------------------------------------------------------------------------------------------------------------------------------------------------------------------------------------------------------------------------------------------------------------------------------------------------------------------------------------------------------------------------------------------------------------------------------------------------------------------------------------------------------|
| <p>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u>&lt;신 설&gt;</u></p> | <p>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u>제69조의3(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u></li> <li><u>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u></li> <li><u>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u></li> <li><u>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u></li> </ol> <p><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

| 현행 | 개정안                                                                                                                                                                                                                                                                                                                                                                                                                                                                                                          |
|----|--------------------------------------------------------------------------------------------------------------------------------------------------------------------------------------------------------------------------------------------------------------------------------------------------------------------------------------------------------------------------------------------------------------------------------------------------------------------------------------------------------------|
|    | <p>1. 차별행위의 중지</p> <p>2. 피해의 원상회복</p> <p>3.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p> <p>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69조의4(의견진술의 기회 부여)</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9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p> |

| 현행             | 개정안                                                                                                                                                                                                                                                                                                                                                                                                                                                                                                                                                     |
|----------------|---------------------------------------------------------------------------------------------------------------------------------------------------------------------------------------------------------------------------------------------------------------------------------------------------------------------------------------------------------------------------------------------------------------------------------------------------------------------------------------------------------------------------------------------------------|
| 제89조(과태료) <신설> | <p><u>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u>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한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u></p> <p><u>제69조의5(시정명령의 확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u></p> <p><u>제69조의6(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p> <p><u>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u></p> <p><u>제89조(과태료) ① 제69조의5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① (생략)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br>-----<br>-----<br>-----. |

□ 개정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등<sup>1)</sup>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sup>2)</sup>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2024. 1. 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질성 정신장애
  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 기분장애
  5.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안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6까지의 규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sup>3)</sup>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별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와 유사한 구조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시정명령 등의 주체는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조직법」 제32조4)에서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개정안의 입법 심사 과정에서 해당

4)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보건복지부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기 어려우며,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조항을 두는 경우 유사 입법례와 「정부조직법」의 규정을 고려하여 인권옹호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단체 의견 >

| 부처명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br>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등에게 차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고 강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지속되어 왔고, 사실상 정신질환 유무만으로 차별하는 행위가 일상에서 빈번했던 바, 개정안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며, 다만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필요한 기간, 절차, 방법등에 대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 의 처

02)6788-5498